

부산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34091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6591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340914 판결

전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1. B

2. 유한회사 C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유한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판사 김경수

별지